

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

□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!

선배·동료 위원님 여러분!

김 상 진 의원입니다.

「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한 제안설명을
드리고자 합니다.

□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하여

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율을 조례로

위임한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조항이 종전 법

“제38조제4항제2호”에서 법 “제38조제4항제1호 본문”으로
개정됨('18.12.24)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.

□ 보다 자세한 사항은

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며,

개정안의 취지를 잘 살피셔서 만장일치로

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

감사합니다.